

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15일		
매도인	①성명(법인명)			②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	
	③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		
매수인	④성명(법인명)			⑤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	
	⑥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		
⑦허가신청하는 권리			[] 소유권 [] 지상권					
토지에 관한 사항	번호	⑧소재지	⑨지번	지 목		⑫면적 (㎡)	⑬용도지역· 용도지구	⑭이용 현황
				⑩법정	⑪현실			
	1 2 3							
	⑮권리 설정 현황							
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	번호	⑯종 류		⑰정착물의 내용		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		
						⑱종 류		⑲내 용
1 2 3								
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	번호	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		그 밖의 권리의 경우			㉓특 기 사 항	
				㉑존 속 기 간 ㉒지대(연액)				
	1 2 3							
계약예정금액 에 관한 사항	번호	토 지				정 착 물		㉔예정금액합계 (원)(㉗+㉘)
		㉕지목 (현실)	㉖면적 (㎡)	㉗단가 (원/㎡)	㉘예정 금액(원)	㉙종류	㉚예정 금액(원)	
	1 2 3							
			계	평균	계		계	계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매도인 (서명 또는 인)

매수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 (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) 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 달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유의사항

- 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.
 - 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- 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- ※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2.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√ 표시합니다.
- 3. ⑩⑪란에는 전·답·대·잡종지·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.
- 4.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·구조·사용년수 등을,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·본수·수령 등을 기재합니다.
- 5.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6. ㉔란에는 매매·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